보이스피싱

○ 전화·문자를 이용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, 피싱 범죄란?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 - ^①보이스피싱 ^②스미싱 ^③메신저 피싱 ^④몸캠피싱·로맨스스캠 ① 송금한 경우 - *송금한 피해자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요청* 후 해당 은행에 3일 이내 필수 서류 제출 ※ [©]피해 구제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^②시건시고 시실확인원, ^③본인서명시실 확인서, ^❸계약체결/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, ^⑤전기통신금융 사기 전회번호 등 신고 신청서 ②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경우 - 즉시 '비행기 모드' 전환, 백신 프로그램"을 사용하여 악성 애플리케이션 삭제 경찰관 * V3 Mobile, 알약 M, 싹다잡아 대응 유형 ※ 증거 확보를 위해 삭제[여부 등을 수시부서와 시전 논의 ③ 직접 전달 or 특정 장소 보관 - 피해자로부터 인상착의 청취 후 특정→수색 활동, 사건 접수 - 전달 예정→형사팀 지원요청 후 협력하여 수거책 검거 ④ 금전 피해 없는 경우 - 개인정보 알려준 경우→금감원 *'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'* 등록 안내 - 휴대폰·인터넷 개통 의심→*'엠세이퍼'* 안내 ○ ^①출처 불분명 URL 클릭 금지 ^②송금 상대 확인 ^③모르는 전화 계좌이체· 현금인출·전달 무조건 금지 [®]스마트폰에 신분증·비밀번호 등 저장X ○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융사 서비스 안내 서비스 내용 이체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지연 이체 ※ 최소 3시간 이상 선택 가능, 창구 거래 미적용 해외 IP 차단 국내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 피해 ○ 명의도용 피해 예방 안내 구제 대응 조치 내용 (피해자 안내) 명의도용 확인 통신사 직접 방문, '엠세이퍼'를 통한 확인 주민등록증-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재발급 운전면허증-운전면허시험장 or 경찰서 방문

○ 피해금 환급 절차-지급정지 이후 금융갑독원(1332)에서 진행

유출여부 확인 | *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(kidceprivacy.go.kr)* 개인정보 유출 확인

개인정보 도용· 개인정보포털(privacy.or.kr) 계좌 및 대출 조회

- 수취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입금한 경우 피해 금액 비례 환급